

[일련번호 : 46]

양 천 구

시 정 요 구

제 목 기간제근로자 고용·산재 보험료 정산 부적정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△△과

내 용

1. 업무개요

△△과는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복무관리·임금지급 등 관리·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고용보험법」 제8조 및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6조에 따르면,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고,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 10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, 고용관계 종료일 등을 그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.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76조(보험료의 부담), 제78조(보험료의 납부기한) 및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(보험료의 부과 징수)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,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

또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39조(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)

및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9 (보험료의 정산)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 신고 당시 보수월액에 대해 보험료를 산정하여 납부하고 퇴직 시 실제 납부한 보험료와 당초 산정 징수한 보수월액 보험료의 금액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. 따라서 산정·징수한 보수월액 보험료의 금액이 채용 관계가 끝난 후 법령에 따라 다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,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하는 등 근로자와 정산한 후 공단과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가. 임금에서 보험료 공제 소홀

① △△과는 기간제근로자 고용·산재보험료를 납부함에 있어 근로자부담분은 각 근로자의 임금에서 고용보험 근로자실업급여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함에도, 2023년 4~5월 임금 지급 시 근로자실업급여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사업주 부담금(사업주고안직능보험료)에 해당하는 금액을 잘못 공제함으로써 ○○○ 외 6명의 임금에서 고용보험료 총 19,790원을 과소 공제하는 등 임금을 과다지급하고 근로자부담분 일부를 예산으로 납부한 사실이 있다.

[표1] 23. 4~5월 고용보험료 급여공제 부적정 처리 내역

연번	해당월	성명	고용종료일	근로자실업 급여보험료 부과·납부액 (원)	임금 공제액(원)	차액(과소공 제액)(원)	비고
						(계)19,790	
1	23.4월			29,500	27,840	1,660	과소 공제
2	23.4월			28,800	27,250	1,630	과소 공제
3	23.4월			39,100	36,940	2,160	과소 공제
4	23.4월			30,730	29,000	1,730	과소 공제
5	23.4월			34,440	32,510	1,930	과소 공제
6	23.5월			35,980	33,970	2,010	과소 공제
7	23.5월			33,780	31,890	1,890	과소 공제
8	23.5월			19,550	18,470	1,080	과소 공제
9	23.5월			41,480	39,170	2,310	과소 공제
10	23.5월			41,440	39,130	2,310	과소 공제
11	23.5월			19,550	18,470	1,080	과소 공제

② 기간제근로자 건강·장기요양 보험료 납부 시에도 근로자부담분을 각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함에도, 2024. 9월 임금 지급 시 실제 부과·납부된 근로자부담금과 상이한 금액을 공제하여 ○○○ 외 6명의 임금에서 건강보험료 총 588,370원을 과소 공제하는 등 임금을 과다지급하고 근로자 부담분 일부를 예산으로 납부한 사실이 있다.

[표2] 24. 9월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급여공제 부적정 처리 내역

연번	해당월	성명	고용종료일	건강+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부과·납부액(원)	임금 공제액(원)	차액 (과소공제액) (원)	비고
				1,312,050	723,680	(계)588,370	
1	24.9월			277,370	90,460	186,910	과소 공제
2	24.9월			201,050	90,460	110,590	과소 공제
3	24.9월			202,010	90,460	111,550	과소 공제
4	24.9월			154,410	90,460	63,950	과소 공제
5	24.9월			202,090	90,460	111,630	과소 공제
6	24.9월			92,330	90,460	1,870	과소 공제
7	24.9월			92,330	90,460	1,870	과소 공제
8	24.9월			90,460	90,460	-	

③ 2025. 5월 임금지급 시 고용보험 근로자실업급여 보험료(근로자부담분)만을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, 고용보험의 사업주부담분인 사업주실업급여보험료 및 사업주고안직능보험료까지 포함하여 고용보험료 전액을 임금에서 공제함으로써 근로자 ○○○ 외 7인의 임금에서 총 1,413,990원을 과다공제하는 등 임금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있다.

[표3] 24. 5월 고용보험 근로자실업급여보험료 급여공제 부적정 처리 내역

연번	해당월	성명	고용보험근로자 실업급여 납부액(원)	임금 공제액(원)	차액(과소공제액)(원)	비고
			717,110	2,131,100	(계)-1,413,990	
1	25.5월		89,160	262,550	-173,390	과다 공제
2	25.5월		0	19,600	-19,600	과다 공제
3	25.5월		78,210	230,280	-152,070	과다 공제
4	25.5월		71,050	209,210	-138,160	과다 공제
5	25.5월		78,200	230,260	-152,060	과다 공제
6	25.5월		20,750	61,100	-40,350	과다 공제
7	25.5월		117,860	347,010	-229,150	과다 공제
8	25.5월		261,880	771,090	-509,210	과다 공제

④ 2024. 10월~12월 건강·장기요양 보험료 부과·납부 고지서상 근로자부담분 금액 총 736,770원 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, 동일 항목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총 723,680원으로 다르게 처리하여 매월 13,090원을 과소 공제한 사실이 있다. 이 과정에서 보험료 납부 공문에 가입자별 세부 부과내역이 첨부되지 않아 각 대상자별 부과금액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, 이로 인해 임금공제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부과·공제 업무처리 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.

[표4]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급여공제 부적정 처리 내역

연번	해당월	건강+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부과·납부 총액(원)	임금 공제 총액(원)	차액(과소공제액) (원)	부적정 내역
1	24.10월	736,770	723,680	13,090	과소 공제, 가입자별 세부 부과내역서 누락으로 대상자별 부과금액 확인불가
2	24.11월	736,770	723,680	13,090	
3	24.12월	736,770	723,680	13,090	

나. 퇴직자 보험료 정산 소홀

△△과에서는 2023. 4. 30.자 퇴직한 기간제근로자 민영만에 정산 부과된 건강보험료(장기요양보험 포함) 근로자부담분 88,490원 및 고용보험료 근로자실업급여보험료 12,870원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반환받아 납부하여야 함에도, 근로자 본인에게 반환받지 않고 당해 예산으로 납부한 사실이 있다.

2024. 8. 31.자 퇴직한 기간제근로자 이인희에 정산 부과된 건강보험료(장기요양보험 포함) 근로자부담분 114,160원 및 고용보험료 근로자실업급여 보험료 25,680원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반환받아 납부하여야 함에도, 근로자 본인에게 반환받지 않고 당해 예산으로 납부하는 등 아래 표와 같이 퇴직자 ○○○, ○○○에 대해서도 정산 보험료를 본인에게 징수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[표5] 퇴직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미정산 내역

연번	해당월	성명	고용종료일	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			부적정 내역
				건강보험료* 근로자부담분	근로자실업 급여보험료 부과금액(원)	계	
1	23.5월			88,490	12,870	101,360	근로자 본인에 징수하지 않고 예산으로 납부
2	24.9월			114,160	25,680	139,840	근로자 본인에 징수하지 않고 예산으로 납부
3	25.4월			141,130 부과, 92,330 공제(48,800 원 과소공제)		48,800	48,800원 근로자 본인에 징수하지 않고 예산으로 납부
4	25.5월				95,790	95,790	근로자 본인에 징수하지 않고 예산으로 납부
5	25.5월				57,270	57,270	근로자 본인에 징수하지 않고 예산으로 납부
6	25.6월				-97,200	-97,200	근로자 본인에 환급해야함에도 환급하지 않음
7	25.6월			97,120		97,120	근로자 본인에 징수하지 않고 예산으로 납부
8	25.6월			58,560		58,560	근로자 본인에 징수하지 않고 예산으로 납부
- 총 미징수액 : 598,740 원 - 총 미환급액 : 97,200원				※ (-) : 근로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, (+) : 근로자에게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			

*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 포함

다.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퇴직 정산 절차상 소홀

△△과에서는 2023. 10. 31. 퇴직한 기간제근로자 ○○○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정산 시,

- 건강보험료 : 2023. 11월 근로자부담금 257,840원 부과되어 예산으로 납부(2023.11.29.)하였으며, 2023. 12. 20.에 근로자부담금 환급액 - 144,720원으로 고지서가 발부되었음
- 고용보험료 : 근로자부담분 58,070원이 정산 부과되어 이 부분도 예산으로 기 납부

이에 △△과에서는 ○○○ 본인에게 11~12월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금을 상계 처리한 금액 113,120원(257,840원-144,720원) 및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

58,070원, 총 171,190원을 △△과 보통예금계좌 (우리 ****-****-*****)로 반환 받아 2023. 12. 22. ‘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(퇴직정산분) 반납(△△과-19034, 2023.12.22.)’으로 세외수입 결의하여 기타잡수입 처리하였다.

그러나 이는 당해연도에 발생한 급여에 대한 정산이므로 당해연도 예산으로 여입 하였어야 함에도 세외수입(기타잡수입)으로 처리하여 절차 상 부적정한 사실이 있다.

[표6] 퇴직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정산 절차 부적정 내역

대상자	고용종 료일	세외수입 반납액(원)				부적정 내역	
		건강·요양보험			고용보험		계
		최종액	11월	12월	58,070	171,190	당해연도 예산으로 여입처리하지 않고 세외수입 처리함
		113,120	257,840	-144,720			

라.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지출 회계연도 독립원칙 위반 등

① △△과는 2023. 12월분 건강·연금보험료 총 1,317,980원을 2023년 임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포함하여 2023년도 예산으로 납부하여야 함에도, 2024. 1. 12.에 ‘기간제근로자 건강·연금보험료 지출(△△과-592, 2024.1.12.)’로 2024년 예산을 사용하여 납부함으로써 회계연도 독립원칙 위반한 사실이 있다.

또한 2024. 12월분 건강·연금보험료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부과된 보험료 총 1,863,540원을 2024년 임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포함하여 2024년 예산으로 납부하여야 함에도, 2025. 1. 5.에 2025년 예산으로 납부하여 회계연도 독립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.

② △△과는 2024년 11월 건강·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이 2024. 12. 10.까지 임에도 이를 약 1개월 경과한 2025. 1. 8.에 납부하였다. 이로 인해 2024년 11월분 건강·연금보험료 총 1,888,620원을 2025회계연도 예산으로 집행하여, 해당 보험료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익년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등 회계연도 독립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. 또한 보험료 납부를 지연함에 따라 연체금 36,500원이 발생하는 등 보험료 납부 관리가 부적정하였으며 다만, 해당 연체금 36,500원은 예산으로 납부하지는 않았다.

합산 보험료 (건강연금)

2024년 11월

영수증 (납부자용)

사업장명 양천구청 도로과 2021년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

사용자 양천구청 도로과 2021년 도로 및 도

납부자번호	57116406172 01		사업장 관리번호	92126515041		
납부할 금액 (가+나)	1,888,620 원 납부기한		2024년 12월 10일 까지			
보험료 (가)	건강①	1,304,680 원 연금②	415,080 원	건강①	원	
	장기요양③	168,860 원	고용④	원	장기요양③	원
	소계(③+④)	1,473,540 원	산재⑤	원	연소계(①+②)	원
	보험료 합계		1,888,620 원		연체금⑥	원
					고용①	원
				산재①	원	
				연체금 합계		원



◇ 납부기한이 지나 고지서로 납부할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금은 다음 달 정기고지서에 포함되어 고지될 수 있습니다.

◇ 납부기한과 관계없이 빨리 납부할수록 연체금 부담이 줄어들며, 납부 당일까지의 연체금을 포함한 총 미납보험료 납부를 원하실 경우, 고객센터(1577-1000) 또는 공단 지사로 연락주시면 즉시 고지서 재발급, 가상계좌 전송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안내하여 드립니다.

2024년 11월 20일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

수납인

최초 납부 고지서 (납부기한 : 2024.12.10.)

가상계좌 전송내역 [회전식]

사업장명 : 양천구청 도로과 2021년 도로 및 대표자명 : 이기재

통합납부자번호 : 57116406172 사업장관리번호 : 92126515041

*보험명 : 채납환산

고지년월 : (건강) 2024.11 ~ 2024.11 (1개월) 1,502,020(원)
(연금) 2024.11 ~ 2024.11 (1개월) 423,100(원)

*납부할 보험료 : 1,925,120 (원)

보험료: 1,888,620 (원)
연체금: 36,500 (원)
채납처분비등: 0 (원)

은행 : 국민

가상계좌번호 : 922990-72-067419

납부마감일 : 2025.01.08 (납부가능시간 : 7:30 ~ 23:30)

안내사항

- *보험명 : 1) 수신받은 해당 보험명
2) 2개 이상의 보험을 하나의 가상계좌로 수신받은 경우 "당월환산" 또는 "채납환산"으로 표기
- *납부할 보험료 : 총 고지금액 중 사업장의 요청에 의한 금액으로 "일부금액"일 수 있습니다.
- 이 가상계좌 전송내역은 납부확인서, 수납확인서, 영수증 대응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납부마감일 이후에는 위 가상계좌로 입금이 불가하므로 재발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- 일부 은행은 ATM 또는 간편송금 등에서 가상계좌 이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.(관련문의 : 해당 은행 고객센터)

국민건강보험공단

납부지연으로 2025.1.8. 납부 가상계좌 안내 내역
- 2024년 11월 건강연금보험료를 2025년 예산으로 납부함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△△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△△과장은

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급여에서 과소공제하거나 부적정 정산된 보험료 총 640,670원을 환수하고, 급여에서 과다공제하거나 부적정 정산된 보험료 총 944,960원을 반환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 향후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시고,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정산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·감독하시기 바랍니다. (시정)

※ 근로자별 보험료 부적정 정산 금액

연번	성명	환수	반환
	계	640,670	-944,960
1			-36,970
2		102,990	
3		3,240	
4		171,820	
5		17,760	
6			-38,420
7			-73,130
8		139,840	
9		205,020	
10			-227,280
11			-509,210
12			-19,600
13			-40,350